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명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8. 8.

발의자 : 박명재 · 이학재 · 강석호

김성원 · 김정재 · 곽대훈

김석기 · 김규환 · 엄용수

송희경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관세사법」은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는 세관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.

그러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.

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과면되거나 해임된 자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자 역시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2제3항 신설).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
2.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시험과목의 일부 면제)</p> <p>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제6조의2(시험과목의 일부 면제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</p> <p>2.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</p>